

“내부고발 자기보호 전략과 방법”



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

내부고발?

- ①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
- ② 자신이 속한 조직이
- ③ 저지른 비리를
- ④ 폭로하는 행위

DAUM 한국어사전

내부고발?

①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

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(정의) 제2호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공익신고 내용이 **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**
공익신고를 한 경우

나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**금품이나 근로관계 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**
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

내부고발?

- ①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
- ② 자신이 속한 조직이

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(정의) 제7호

"내부 공익신고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.

- 가.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에 **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**
- 나. 피신고자인 공공기관, 기업, 법인, 단체 등과 공사·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**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**

내부고발?

- ①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
- ② 자신이 속한 조직이
- ③ 저지른 비리를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(정의) 제1호

"공익제보"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상의 **공익 신고**와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의 **부패 신고**,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.

*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(법 제15조)

내부고발?

- ①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
- ② 자신이 속한 조직이
- ③ 저지른 비리를
- ④ 폭로하는 행위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(정의) 제1호

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. 다만,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.

1. 위법행위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기관, 단체,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2. 시 3. 시의원 4. 공익제보지원위원회

내부고발은 공직자의 의무

부패방지법 제56조 (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)

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

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

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

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·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내부고발은 보호되고 지원된다

「부패방지법」 제62조 (신분보장 등)

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·단체·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「부정청탁 금지법」 제15조(신고자등의 보호 보상)

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, 과태료 부과, 징계처분,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*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

합리적인 이유(Reasonable doubt)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

그러나 불이익 조치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(정의) 제6호

- 가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- 나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**부당한** 인사조치
- 다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**본인의 의사에 반하는** 인사조치
- 라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**차별**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
- 마.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**기회의 취소**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**취급 자격의 취소**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**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**
- 바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사. 직무에 대한 **부당한** 감사(監査)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아.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**행정적 불이익**을 주는 행위
- 자.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(解止), 그 밖에 **경제적 불이익**을 주는 조치

내부고발 단계별 숙지사항

『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』 (박흥식 이지문 이재일 저) 인용

1단계 비리행위 인식의 단계

- 1) 전문가 등 조언을 해 줄 사람을 구한다
- 2) 조직 내에서 문제를 시정 및 조정하는 절차를 확인한다
- 3) 가족과 상의해본다
- 4) 동료들의 생각에 대해 들어 본다
- 5)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모범을 보인다.

2단계 결심 실행의 단계

- 1) 입증 책임을 위한 **증거자료 확보**한다
- 2) **법과 제도**를 철저히 조사한다
- 3) 법률적 조언을 구한다
- 4) 공익제보 **방법을 숙지**한다
- 5)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
- 6) 언론과의 접촉은 신중해야 한다. 휘발될 수 있다
- 7) 시민단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관계를 갖는다

3단계 신고 이후의 단계

- 1) 조직과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
- 2) 경제적 곤란에 대비하라
- 3) 신분노출을 최대한 주의하라
- 4) 신고로 부당함이 발생한다면 과감히 보호를 요청한다
- 5) 건강 유지에 힘쓴다
- 6)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
- 7) 미래를 설계한다

서울시 공익제보 방법

공직자의
비리행위,
공익침해행위,
행동강령위반
발견 시



공익제보 신고 창구

- 1 시 응답소 “원순씨 핫라인”
- 2 우편 (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5동 2층 공익제보지원센터)
- 3 팩스 (02-2133-1306~7)
- 4 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방문

(기재사항) 인적 사항, 피신고인, 신고내용, 신고취지 및 이유,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

“시장은 공익제보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”

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

공익제보 보호지원을 위한 “안심변호사”

2013.8월 전국 최초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 채택

제8조(공익제보의 접수 등) (중략)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.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.

2014.5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 도입

공익제보 법률상담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의 역할 기능 수행

※ 2016년 명칭을 관(官)중심이 아닌 시민관점인 “공익제보 안심변호사” 개선

서울시 안심변호사 안내

서울특별시 | 지역상생교류센터 사업설명회 | 서울소식 | 응답소 | 정보공개 | 로그인 | 회원가입 | Site Map

응답소

민원신청 | 민원결과 | 사례모음 | 소통광장 | 정보광장

민원신청

- 시정불편 건의질의
- 원순씨에게 바랍니다
- 공직자비라공익신고**
- 하도급 부조리 신고
- 인권침해구제신청
- 민생침해신고(눈물그만)
- 지방세 이의신청

원순씨 핫라인(비리신고, 공익제보)

원순씨 핫라인(비리신고, 공익제보) > 민원신청 > 원순씨 핫라인 > 공직자비리신고



각종비리..!!
이제 원순씨 핫라인으로 신고하세요.
원순씨가 다 들습니다!

- 공직자비리신고
- 공익신고
- 甲의 부당행위 신고
-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
-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

공직비리 익명신고

지방공무원, 지방공기업 대상

공직자비리신고

-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.
-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(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)
- 전화상담 및 문의 :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(02)2133-4800

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내(상담 및 대리신고) | 신고하기

서울특별시 응답소 - Internet Explorer
 https://eungdapso.seoul.go.kr/Shr/Shr02/Shr02_popup2.jsp

- 기타문의는 공익제보지원센터 메일(watchdog@seoul.go.kr)
- 중복상담을 피하기 위해 제보 건에 대해서는 1명의 안심번호사를 선택하시어 상담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.

연번	분야	이름	소속	이메일
1	반부패	이원호	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(현)법무법인 우주 (전)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	leewonho@seoulbar.or.kr
2		이상희	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(현)법무법인 지향 (현)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(현)호루라기재단 이사	shlee@jihyanglaw.com
3		박병언	한국투명성기구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도담	pbe1894@gmail.com
4		최재홍	호루라기재단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자연	jaebong75@naver.com
5		이상대	(현)홍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(현)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	xingd1@nate.com
6	환경	정남순	서울환경연합 추천 변호사 (현)환경법률센터 부소장(상근)	jns@kfem.or.kr
7	소비자	김희경	서울YMCA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리더스 (전)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	mediatorkim@gmail.com
8		조충의	서울YMCA 추천 변호사 (현)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사단 (현)법무법인 다담	cho.yongui@gmail.com
9	복지	정민영	(현)법무법인 덕수 (전)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(전)한겨레신문 사회부문 기자	minyoung.choung@gmail.com
10	인권	김수민	(현)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변호사 (전)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	kim798@hanmail.net

※ 항의/호소/주장/청원/의견 등의 일반민원 및 시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, 행정청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

회원가입 | Site Map |

정보광장

원순씨찾라인 > 공직자바리신고



퇴직공무원
특혜제공 신고

·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
호됩니다.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

대리신고) < 신고하기



연번	분야	이름	소속	이메일
1	반부패	이원호	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(현)법무법인 우주 (전)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	leewonho@seoulbar.or.kr
2		이상희	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(현)법무법인 지향 (현)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(현)호루라기재단 이사	shlee@jihyanglaw.com
3		박병언	한국투명성기구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도담	pbe1894@gmail.com
4		최재홍	호루라기재단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자연	jaebong75@naver.com
5		이상대	(현)홍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(현)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	xingd1@nate.com
6	환경	정남순	서울환경연합 추천 변호사 (현)환경법률센터 부소장(상근)	jns@kfem.or.kr
7	소비자	김희경	서울YMCA 추천 변호사 (현)법무법인 리더스 (전)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	mediatorkim@gmail.com
8		조용의	서울YMCA 추천 변호사 (현)서울YMCA 시민권익변호사단 (현)법무법인 다담	cho.yongui@gmail.com
9	복지	정민영	(현)법무법인 덕수 (전)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(전)한겨레신문 사회부문 기자	minyoung.choung@gmail.com
10	인권	김수영	(현)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변호사 (전)서울인권도시 비전연구 연구원	sykim798@hanmail.net

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지원 제도

①

보상금

- 공익제보로 시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
-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개정 (2017.6.)
한도 없는 보상대상가액의 30% 보상금 지급

②

구조금

- 공익제보로 인하여 치료,이사,쟁송,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급
-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**재취업 지원**

③

포상금

-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
***공익제보로 인한 징계/형사처벌/행정처분을 이끈 경우**

때로는 부패가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여겨져 절망하기도 한다.
그러나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반부패 운동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성전이다.
내부고발자들은 바로 그 전쟁의 용감하고 의로운 기사들이다.
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첩경이다.

박원순, 1995년 11월 [샘이 깊은 물] 기고 글에서